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441
----------	-----

2024. 11. 27.
행정안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2024. 11. 4. 강남구청장(교통행정과)

나. 상정의결

- 제32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(2024. 11. 27.)
“원안가결”

2. 제안이유(제안설명: 안전교통국장)

통행이 많은 주요 횡단보도나 지하철역 주변 또는 구청·동 행사에서 교통 지도를 하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재정지원을 하여 효율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관내 행사에서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해 교통안전 봉사 단체에 교통지도 협조 요청(안 제9조제2항)
- 나.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또는 교통안전 물품 등 지원(안 제9조제3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 「교통안전법」 제3조(국가 등의 의무)
- (2) 「도로교통법」 제5조(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), 제5조의3(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)

나. 예산조치 : 2025년 예산 반영 예정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(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- (2) 입법예고(2024. 10. 4.~10. 24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(4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- (5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- (6) 입안심사 결과 : 특기할 사항 없음

5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: 이상민)

가. 조문 내용별 검토

- 안 제9조는 관내 주요 횡단보도나 지하철역 주변 또는 구청·동주민센터 행사 시 교통지도 봉사활동을 하는 봉사단체에 경비·물품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교통혼잡 완화, 긴급상황 대처 지원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고, 교통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교통관리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음.
- 따라서 개정조례안에서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교통지도 사항에 대하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하는 것으로 사료됨.

* (참고)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연합회 비교

【모범운전자회】

- 도로교통법 제5조(신호 또는 지시에 따른 의무)에서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으로 ‘모범운전자’로 정하고 있고, 제5조의2(모범운전자연합회)는 ‘모범운전자들이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’고 함.
-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(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)
 - 1. 모범운전자 2. 부대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3. 소방차·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
- 우리구는 상습 꼬리물기 지점 특별관리와 구·동 행사 교통지도, 대치동 학원가 혼잡시간대 교통지원을 하고 있음.

【녹색어머니연합회】

-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 -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- 경찰서 산하 초등학교별 학부모 교통안전 관련 자율 봉사조직임.
- 등·하교 시간 초등학생 교통안전지도 및 교통법규 준수 계도 등을 하고 있음.
 - *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운영비(발대식, 성과보고회, 캠페인 등), 물품비(근무복, 안전물품비) 지급

- 그러나 개정안의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“구민의 통행이 많은 주요 횡단보도나 지하철역 주변 등에서 교통안전을 위하여”와 “관내행사에서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판단될 경우”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, 이는 구민의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하고자 하는 동일한 사항으로 보여 조항을 나눌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여짐.
- 이외에도 녹색어머니연합회는 등·하교시간에 활동을 하여 개정안과 같이 교통안전 관련 봉사단체로 규정하는 경우 모범운전자회와 역할과 활동시간이 다르므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규정할 경우,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규정, 각기 역할과 활동시간이 다른 교통봉사단체가 한 문장 속에 뒤섞여 있는 규정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할 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내용이 혼동되지

않도록 정확하게 표현해야 함.

- 이러한 개정조례안은 규정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므로 이에 대한 수정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.

개정안	수정안
<p>제9조(교통지도) 구청장은 구민의 통행이 많은 주요 횡단보도나 지하철역 주변 등에서 교통안전을 위하여 녹색어머니연합회, 모범운전자회 등 교통안전 관련 봉사단체에게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.</p>	<p>제9조 (교통지도 등)①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녹색어머니연합회로 하여금 등·하교시간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 할 수 있다.</p> <p>② 구청장은 관내 각종 행사 시 구민의 통행이 많은 주요 횡단보도나 지하철역 주변 등에서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모범운전자회 등 교통안전 관련 봉사단체에게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.</p> <p>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녹색어머니연합회와 모범운전자회 등 교통안전 관련 봉사단체가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 또는 교통안전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.</p>

나. 종합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봉사단체에 대한 물품지원을 통해 이들의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교통안전 및 봉사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상정되었음. 교통봉사단체는 시민 안전과 공공질서에 유지에 기여하고 있으나, 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자원을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임.
- 이에 따라, 본 조례안은 물품지원을 통해 교통봉사단체의 역량

을 강화하고, 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.

- 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, 교통봉사단체는 필요물품의 지원을 받아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, 이는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들의 안전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. 또한 행정차원에서도 이들 단체의 활동을 뒷받침함으로써 공공 서비스 제공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예상됨.
- 다만, 물품지원에 따른 예산 부담과 지속적인 관리 및 모니터링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는 바, 이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. 지원 대상과 물품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중복지원을 지양하고,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요구됨.
-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봉사단체의 활동지원을 강화하고,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시민의 안전 증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나, 예산의 중복지원 및 물품관리 측면에 대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.

참고 관계법령 발췌서

□ 교통안전법

- 제3조(국가 등의 의무) ①국가는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②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6. 9.>
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국가등”이라 한다)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·교육·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.

□ 도로교통법

- 제5조의3(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)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.
②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③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

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7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

8. 심사 결과 : “원안가결”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10. 기타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1.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

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41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4. 11. 4.
제출자 : 강남구청장
제출부서 : 교통행정과

1. 제안이유

통행이 많은 주요 횡단보도나 지하철역 주변 또는 구청·동 행사에서 교통지도를 하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재정지원을 하여 효율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관내 행사에서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해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교통지도 협조 요청(안 제9조제2항)
- 나.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또는 교통안전 물품 등 지원(안 제9조제3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 「교통안전법」 제3조(국가 등의 의무)
- (2) 「도로교통법」 제5조(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), 제5조의3(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)

나. 예산조치 : 2025년 예산 반영 예정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(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- (2) 입법예고(2024. 10. 4.~10. 24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(4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- (5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- (6) 입안심사 결과 : 특기할 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봉사단체”를 “봉사단체(이하 “봉사단체”라 한다)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구청장은 관내 행사에서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봉사단체에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.
- ③ 구청장은 봉사단체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 또는 교통안전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교통지도를 하는 봉사단체에 필요한 경비와 교통안전 물품 지급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4조제3항
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. 다만, “한시적”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.
 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교통지도를 하는 봉사단체에게 지급하는 경비가 연평균 3억 미만으로,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4조제3항의1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.

4. 작성자

- 교통행정과 행정9급 권오준(02-3423-6393)